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 홍보

1. 개최일시 : 2022년 12월 14일(수) 14:30~15:30

2. 참석인원(정수/참석) : 11명/ 7 명

<table>
<tr><th>번호</th><th>심의안건 명</th><th>심의결과</th><th>내용</th></tr>
<tr><td>1</td><td>유치원 2022학년도 만5세 졸업기념사진 촬영 계획(안)</td><td>원안가결</td><td>1. 제안이유
제42회 유치원 졸업을 기념하며 개인 학사모 사진 및 단체 사진 촬영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가. 대상: 유치원 만5세 푸른반 졸업기념사진 촬영 신청 유아(총 11명, 전원 신청)
나. 내용:
<table>
<tr><th>종류</th><th>내용</th><th>금액</th><th>비고</th></tr>
<tr><td>개인 사진</td><td>개인 학사모 사진(액자)</td><td>30,000원</td><td>수익자부담</td></tr>
<tr><td>단체 사진</td><td>단체 사진</td><td>7,000원</td><td>운영비지원</td></tr>
</table>
다. 촬영업체: 그린 스튜디오. 끝.

3. 심의 내용 : 원안가결</td></tr>
<tr><td>2</td><td>2022 고양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td><td>원안가결</td><td>1. 제안이유
가.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생활인권규정 기반 마련
나.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올바른 이해 및 적용으로 약속과 규칙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정착

2. 주요내용
가. 학교생활인권규정 점검 시 필수 검토 사항: 불명확한 조항,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
나. 점검 결과
1)학교 자체 점검 결과(교육청 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이상 없음(2022.9.19.~9.30)
2)교육청 컨설팅 결과: 이상 없음(2022.11.7.)
다. 의견 수렴
1) 학생: 의견 없음.(학생자치회 2022.11.30.)
2) 학부모: 의견 없음.(e-알리미 설문조사 2022.11.24.~11.27)
3) 교원: 의견 없음.(e-알리미 설문조사 2022.11.24.~11.27)
라. 주요개정 내용 : '2022 고양초 학교생활인권규정'현행 유지
마. 홍보 계획
1) 학교 홈페이지 게시
2) 가정통신문 발송

3. 심의 내용 : 원안가결</td></tr>
<tr><td>3</td><td>2022학년도 제3차추가경정예산서(안)</td><td>원안가결</td><td>1. 제안이유
가. 2022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 및 총액교부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반영
나. 신규지정된 목적사업비 및 시보조금 예산편성
다. 사업내 산출내역 조정 및 신규사업 신청

2. 주요내용
[단위 : 천원]
<table>
<tr><th>구분</th><th>세입예산액</th><th>세출예산액</th></tr>
</table></td></tr>
</table>

<table>
<tr><td></td><td></td><td></td><td>
<table>
<tr><td></td><td>경정
예산액</td><td>기정
예산액</td><td>비교증감</td><td>경정
예산액</td><td>기정
예산액</td><td>비교
증감</td></tr>
<tr><td>추경
예산</td><td>1,591,576</td><td>1,586,100</td><td>5,476</td><td>1,591,576</td><td>1,586,100</td><td>5,476</td></tr>
</table>
3. 심의 내용 : 원안가결
</td></tr>
<tr><td>4</td><td>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수정)</td><td>원안
가결</td><td>
1. 제안이유
회계연도 개시전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서 수립후, 접수된 학교발전기금에 따라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시행규칙 제47조(기금의 운용)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나. 주요내용(수정) :
1)수입계획서
<table>
<tr><th>운용
계획</th><th>기부자</th><th>수입기간</th><th>수입계획</th><th>사업명</th><th>비고</th></tr>
<tr><td>1</td><td>개인</td><td>2022.3.1.~2023.2.28</td><td>1,500천원</td><td>학생장학금지원사업</td><td>원안</td></tr>
<tr><td>2</td><td>기업(굿네이버스)</td><td>2022.3.1.~2023.2.28</td><td>2,000천원</td><td>학생복지 지원사업</td><td>1차
수정</td></tr>
<tr><td>3</td><td>종교단체(고양제일교회)</td><td>2022.3.1.~2023.2.28</td><td>1,000천원</td><td>학생복지 지원사업</td><td>1차
수정</td></tr>
<tr><td>4</td><td>고양동주민자치회</td><td>2022.3.1.~2023.2.28</td><td>500천원</td><td>학생복지 지원사업</td><td>2차
수정</td></tr>
</table>
2)지출계획서
<table>
<tr><th>운용
계획</th><th>사업명</th><th>지출시기</th><th>지출계획</th><th>세부사용내역</th><th>비고</th></tr>
<tr><td>1</td><td>학생장학금
지원사업</td><td>2022.3.1.~2023.2.28</td><td>1,500천원</td><td>학생장학금</td><td>원안</td></tr>
<tr><td>2</td><td>학생복지
지원사업</td><td>2022.3.1.~2023.2.28</td><td>2,000천원</td><td>학생장학금</td><td>1차
수정</td></tr>
<tr><td>3</td><td>학생복지
지원사업</td><td>2022.3.1.~2023.2.28</td><td>1,000천원</td><td>학생장학금</td><td>1차
수정</td></tr>
<tr><td>4</td><td>졸업생장학
금지원사업</td><td>2022.3.1.~2023.2.28</td><td>500천원</td><td>학생장학금</td><td>2차
수정</td></tr>
</table>
3. 심의 내용 : 원안가결
</td></tr>
<tr><td>5</td><td>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학칙 개정(안)</td><td>원안
가결</td><td>
1. 제안이유
가. 학교의 학업중단 예방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규칙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기재토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4항에 의거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선 학교의 혼선 방지하고자 「경기도교육청 학교규칙 표준안」개정 사항 지침에 따름

2. 주요내용
<table>
<tr><th>개정 전</th><th>개정 후</th></tr>
<tr><td>(추가)</td><td>제5장 입학·전학·취학의무의 면제
제25조 (학업중단 예방)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
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d></td><td></td><td></td><td>
<table>
<tr><td></td><td>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td></tr>
<tr><td>제38조(학교규칙 개정절차)
①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인가를 받아 개정한다.
② 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td><td>제39조 (학칙개정 절차)
① 공(사)립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
학칙을 개정한다.
②「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하는 학생 생활에 관한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경기도 학
46조에 따라 학부모, 학생, 교원 대표로 구성된 규정개정심
발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올려야
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
정을 따른다.
⑤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td></tr>
</table>
3. 심의 내용 : 원안가결
</td></tr>
<tr><td>6</td><td>2023 학사일정 운영계획(안)</td><td></td><td>1. 제안이유
2023학년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사일정(수업일수)를 계획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업일수: 190일(1학기 101일, 2학기 89일)
1) 시업식, 입학식 : 3월 2일(수)
2) 개교기념일 : 5월 1일(월)
3) 학교장 재량휴업일 : 6월 5일(월)
4) 여름방학식 : 7월 26일(수) (1학기 마지막일)
5) 여름방학개학식 : 8월 24일(목) (2학기 시작일)
6) 학교장 재량휴업일 : 10월 2일(월)
7) 종업식, 졸업식 : 2024년 1월 4일(목)
나. 추후 감염병 등 공문의 지침, 학교 사정에 따라 학사 일정 변경 가능함
다. 2023학년도 학사 운영 및 자세한 교육활동 안내는 붙임자료 참고

3. 심의 내용 : 원안가결</td></tr>
<tr><td>7</td><td>2022학년도 돌봄교실 겨울방학 운영계획(안)</td><td></td><td>1. 제안이유
방학 동안 질 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

2. 주요내용
가. 방침: 돌봄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 설문 조사를 통하여 최대한 교육수요자의 요구 반영
나. 운영 안내
1) 세부 운영
<table>
<tr><th>기간</th><th>내용</th><th>시간</th><th>참고</th></tr>
<tr><td>1월 5일(목)</td><td>겨울 방학식</td><td>방과 후~17시</td><td>개별도시락 지참(※학교 급식 없음)</td></tr>
<tr><td>1월 6일(목)~10일(화)</td><td>돌봄 방학(3일)</td><td>미운영</td><td>집중 방역, 방학 준비 등</td></tr>
<tr><td>1월 11일(수)~2월 23일(목)</td><td>돌봄교실 운영(30일)</td><td>8:30~16:00
(2:30 이후 1개반</td><td>특별프로그램(6가지), 여름방학 과제, 기초수학, EBS시청, 그림일기, 예체능 활동 등</td></tr>
</table>
</td></tr>
</table>

		합반 운영 예정)	
2월 24일(금)~2월 28일(화)	신학기 준비일(3일)	미운영	집중 방역, 신학기 준비 등

2) 운영 대상: 방학 중 돌봄교실 참여 희망자(1~2학년) 48명 신청
3) 운영 장소: 서관1층 돌봄교실 3실
4) 지도교사

담당	직위	성명	비고
돌봄교실 운영 및 학생 관리	돌봄전담사	권00, 김00, 김00	방학 중 전담사 연가 사용 시 대체인력 채용 운영

5) 준비물: 방학 과제 해결을 위한 준비물, 독서록, 필기도구
6) 특별프로그램 6강좌(주5일 오전, 오후 두 시간씩 운영)
- 클레이&토탈공예, 보드게임, 놀이한자, 놀이체육, 창의블럭, 요리교실
7) 급간식: 수익자 부담 제공, 교육복지대상 무상지원(단, 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수량	단가	비고
중식비	1식	5,500원	* 1인당 165,000원(30일×5,500원) 수익자부담 * 공급 업체: 마미랑푸드 - 업체선정 이유: 소수의 급식 인원과 배달 거리로 인해 급식 공급이 가능한 유일한 업체임.
간식비	1식	1,200원	* 1인당 36,000원(30일×1,200원) 수익자부담

8) 급식 환불: 장기간 결석할 경우, 일주일 전 통보 시 1주일 단위로 환불 가능
9) 주의사항
- 개별 도시락(편의점 도시락 및 배달 도시락 등) 점심 식사에 의한 문제 발생 시 학교는 책임을 지지 않으니 식품 안전이 담보된 도시락 지참 필수
- 귀가 시 학생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 동행하에 귀가 조치함.

3. 심의 내용 : 원안가결

8 | 2023학년도 보결수업규정(안)

1. 제안이유
보결수업을 배정받아 수업을 한 전체 보결수업시수에 대한 수당 지급으로 수업 전념 교사의 사기진작 및 학교교육과정 안정화 모색하고자 교원 수업보결수당 지침 개정에 따라 본교 2023학년도 보결수업규정을 개정하고 수업보결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심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구분	개정 전(2019.12.~2023.2.28.)	개정 후(2023.3.1. 이후 적용)
기본 방침	단기간 대체 시간강사의 임용이 불가능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결강의 발생으로 수업교환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학기 단위로 교사별 배정 수업시수를 초과하여 수업을 한 경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업 보결 수당 편성 가능	단기간 대체 시간강사의 임용이 불가능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결강의 발생으로 수업교환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학기 단위로 교사별 배정 수업시수를 초과하여~~ 수업을 한 경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업 보결 수당 편성 가능
수당	시간당 10,000원 ~ 15,000원	**현행 유지** **예산 1,800(천원)** **(=시간당 15,000원×30명×4시간)**

			구분 / 개정 전(2019.12.~2023.2.28.) / 개정 후(2023.3.1. 이후 적용) **수당 지급 조건** /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학기 단위 교사별 배정수업시수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 / 정규수업시수에 대하여 보결수업을 배정받아 수업을 한 교사의 전체 보결수업시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 수당 지급을 위한 수업 '1시간'은 60분으로 정하되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 합산이 가능하다. **학급 관리 시간** / / **(유치원, 초등, 특수 적용)** 1일간 학급 담임을 겸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급 관리의 시간(학생생활지도, 급식지도 등)에 대하여 수업시간으로 인정 가능(1일 1시간 이내 인정) ※ 경기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준용 3. 심의 내용 : 원안가결